

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(박순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8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2021년 10월 14일
발 의 자 :박순규 의원(1명)
찬 성 자 :김경우, 김기대, 김인제,
김재형, 김정태, 김제리,
김창원, 김태수, 김희걸,
문장길, 박상구, 성흠제,
송도호, 송명화, 송아량,
송재혁, 송정빈, 양민규,
유 용, 이영실, 이정인,
이준형, 임종국, 장상기,
전병주, 전석기, 최웅식,
황규복 의원(28명)

1. 제안이유

- 청계천 등 하천을 중심으로 야간 빛축제가 매년 시민들의 많은 호응 속에 열리고 있고 자치구 하천에서도 빛축제가 시민들의 여가를 위하여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음.
- 빛은 공해적인 측면에서는 관리되어야 하는 반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빛축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더불어 서울시 조명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이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빛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.(안 제26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빛축제 지원) ① 시장은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빛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6조의2(빛축제 지원) ① 시장은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빛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

문서번호

2021091100000006

미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박순규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
이원상 팀장
원동아 예산분석관

접수일 : 2021.09.11.

회신일 : 2021.09.13.

내용문의 : 02-2180-7953

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빗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설(제26조의2(빗축제 지원))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
 - 안 제26조의2(빗축제 지원)를 신설함에 따라, 빗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지원대상 및 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하기 때문에 재정소요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바,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조도형

추계세제팀장 이원상

분석관(주무관) 원동아

☎ 02-2180-7953

e-mail : dongya1@seoul.go.kr